운동사 자격증 갱신발급 신청서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등기우편 주소	(-)		

상기인은 운동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운동사 자격증을 갱신발급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위원인: (서명)

대한운동교육평가원장 귀하

<운동사 자격증 갱신발급 안내>

안녕하십니까? 대한운동사협회는 운동사의 자질함양과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하여 운동사 자격증의 유효기간(3년)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님들은 자격갱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님 또는 그 이전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님들께서는 대한운동교육평가원에 자격갱신 신청을 하시고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대한운동사협회 / 대한운동교육평가원

- 아 래 -

1. 자격갱신 대상자

-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당해 연도 연말에 만료 예정인 회원

2. 자격증 갱신발급 기준

- 최근 3년 이내에 평점 200점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연회비(연체된 연회비 포함)를 선납한 회원
- 단,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사후에 자격증 갱신발급 신청을 할 경우, 신청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유효평점 200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 갱신발급이 가능함

3. 신청기간

- 2016. 10. 01(토) - 2016. 10. 31(월)
- 운동사 자격증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이전(해당년도 10월 말까지)

4. 신규 자격증 유효기간: 3년

5. 회비납부

- 연회비는 향후 자격증 유효기간 3년분 연회비(1년에 5만원, 계15만원)을 선납함.
- 단,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연회비 납부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금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함.

* 송금계좌: 우체국 014241-01-006146 / 대한운동사회

6. 구비서류

- 운동사 자격증 갱신발급 신청서(대한운동교육평가원) 1부
- 평점취득증명서 1부
- 입금내역서 1부

<구비서류 출처>

1)<운동사 자격증 갱신발급 신청서>는 본회 홈페이지 각종 서식 메뉴에서 다운 받아 사용함.

2)<평점증명서>는 본회 홈페이지(로그인) 나의정보>평점확인> 메뉴에서 프린트하여 사용함.

3) 단, 소속기관에서 발급하는 강의경력증명서 및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거나,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본회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사항의 평점인정이 가능함.

7. 접수방법: 등기우편 접수

9. 유의사항

- 운동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운동사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9년 이상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7. 접수처: 대한운동사협회

* 주소 : (06643)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 부속상가 10-304
* 전화 : 02-588-3813